#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92

발의연월일: 2020. 12. 11.

발 의 자:김윤덕·강훈식·김수흥

민병덕 · 박상혁 · 신영대

윤후덕 • 이동주 • 이정문

정춘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지속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 년간 연장하면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 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로, "재산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	과세특례) ①
하는 <u>문화예술단체</u> 가 문화예술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	
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재산세</u> 를	<u>재산세</u>
각각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제한다.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
	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
	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u>경우만 해당한다)</u>
	2024년 12월 31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